

독일의 의원 징계와 관련된 규정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I. 개요

1. 연방의회 의원의 징계 관련 규정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독일 연방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하 “연방 직무규정”이라 함)의 “부칙 1 연방의회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1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하 “행위규율”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방 직무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문¹⁾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으며, 연방의회 내부에서의 조직 구성과 그 임무 및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어 내용상 한국의 국회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연방 직무규정의 법적 형식은 법률이 아니라 자치규정(Satzung)이다.

연방 직무규정의 부칙 중 하나인 행위규율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관계에 대한 법률²⁾(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하 “연방의회 의원법”이라 함) 제44b조³⁾와 동 규정에 근거한



- 1) 독일 기본법 제40조 제1항: 연방의회는 자신의 의장과 대표자들 및 서기를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직무규정을 마련한다.
- 2) 연방의회의원법은 주로 연방의회 의원들의 세비와 각종 금전적 보상,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전직의원들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3) 연방의회의원법
제44b조 행위규율
연방의회는 행위규율을 마련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연방의회 의원이 되기 전의 활동사항 및 의원직과 겸직하는 활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2. 규정된 최저금액을 상회하는 의원직과 겸직하는 활동소득의 유형과 그 금액에 대한 신고의무

연방 직무규정 제18조⁴⁾에 의거하여 발령된 것으로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9조는 삭제되고 현재는 총 8개의 조항이 유효한 상태이다. 행위규율은 연방의회 의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업, 후원금 수령 내역 등의 신고와 관련된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8조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리사항을 담고 있다. 제8조에서는 징계의 유형으로서 해당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을 통한 공표, 질서금(Ordnungsgeld)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에서는 연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연방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⁵⁾

2. 주(州)의회 의원의 징계 관련 규정

주(州)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각 주(州)마다 규율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각 주

(州)들은 모두 독자적인 주(州)의회 직무규정 내지는 시의회 직무규정을 지니고 있으며,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주(州)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 직무규정의 부칙에서 별도의 행위규율을 두고 있어 그 규율의 형태가 연방의회와 매우 흡사하다. 징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 사항과 그 징계 내용도 모두 연방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들에 포괄되므로, 일단 각 주(州)별 상황을 간략하게 개관한 후에, 연방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Landtags von Baden-Württemberg)⁶⁾을 지니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2) 바이에른 주

바이에른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



3. 규정된 최저금액을 상회하는 후원금의 회계처리 및 신고에 대한 의무와 아울러 행위규율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령금지 및 인계의무
 4. 공적 책자 및 인터넷에서의 정보공개
 5. 제44a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의 절차 및 의장단과 의장의 권한과 의무
- 4) 직무규정
제18조 행위규율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관계에 대한 법률(연방의회의원법) 제44b조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에 의해 결의된 행위규율은 이 직무규정의 구성 요소이다(부칙 1).
- 5) 부당한 금품수수의 경우, 해당 금품수수가 형법 제331조 이하의 뇌물수취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연방의회의원법과 행위규율에 따른 징계와는 별도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 6) http://www.landtag-bw.de/dokumente/gesetzliche_regelungen/geschaeftsordnung.pdf

dnung für den Bayerischen Landtag)⁷⁾을 지니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3) 베를린

베를린은 의회의사당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Abgeordnetenhauses von Berlin)⁸⁾을 지니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4) 브란덴부르크 주

브란덴부르크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Landtages Brandenburg)⁹⁾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5) 브레멘

브레멘은 시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r Bremischen Bürgerschaft)¹⁰⁾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6) 함부르크

함부르크는 시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r Hamburgischen Bürgerschaft)¹¹⁾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7) 헤센 주

헤센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Hessischen Landtags)¹²⁾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행위규율은 없으며 또한 징계 관련 규정도 없다.

(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¹³⁾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회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2 Verhaltensregeln für die Mitglieder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이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



7) http://by.juris.de/by/gesamt/LTGO_BY_2009.htm

8) <http://beck-online.beck.de/default.aspx?bcid=Y-100-G-BlnAbghGO>

9) http://www.landtag.brandenburg.de/sixcms/media.php/5701/Geschaeftsordnung_Intranet_Juni2010.pdf

10) <http://www.bremische-buergerschaft.de/index.php?id=138>

11) http://www.hamburgische-buergerschaft.de/cms_de.php?templ=info_sta.tpl&sub1=91&sub2=106&sub3=&cont=223

12) <http://www.landtag.hessen.de/icc/Internet/nav/2fc/d5f30a3e-49db-2e11-b9b7-7912184e3734.htm>

13) http://lxwww2.mvnet.de/dlp_zufi/laris/index.php?&page=TFRHT19NVl8yMDA2X3JhaG1lbi5odG0=

하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

(9) 니더작센 주

니더작센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Niedersächsischen Landtages)¹⁴⁾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니더작센 주의회의 행위규율”(Anlage Verhaltensregeln für die Mitglieder des Niedersächsischen Landtages)이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Landtags Nordrhein-Westfalen)¹⁵⁾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의 행위규율”(Anlage 6 Verhaltensregeln für die Mitglieder des Landtags Nordrhein-Westfalen)이 있다. 다만 행위규율에는 의무위반 시의 징계 관련 내용이 없다.

(11) 라인란트-팔츠 주

라인란트-팔츠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Landtags Rheinland-Pfalz)¹⁶⁾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1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1 Verhaltensregeln für die Mitglieder des Landtags Rheinland-Pfalz)이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

(12) 잘란트 주

잘란트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Saarländischen Landtages)¹⁷⁾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1: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1: Verhaltensregeln für Abgeordnete)이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

(13) 작센 주

작센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14) http://www.landtag-niedersachsen.de/ltnds/live/admin/live.php?cms_id=104

15) http://www.landtag.nrw.de/portal/WWW/GB_I/1.1/Geschaeftsordnung/Geschaeftsordnung.jsp

16) http://rlp.juris.de/rlp/LTGO_RP_2006_rahmen.htm

17) http://www.landtag-saar.de/de/landtag_entdecken/geschaeftsordnung.php

des Sächsischen Landtags)¹⁸⁾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1 작센 주의회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1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Sächsischen Landtags)이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와 더불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질서금(Ordnungsgeld)의 부과가 있다.

(14) 작센-안할트 주

작센-안할트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¹⁹⁾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이 존재한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

(15)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Schleswig-Holsteinischen Landtages)²⁰⁾을 두고 있으며, 주의회 직무규정의 부칙 형태가 아닌 별도의 규정 형태로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의원의 행위규율(Verhaltensregeln für die Abgeordneten des Schleswig-Holsteinischen Landtages)²¹⁾을 두고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으로는 의무위반 사항의 공표가 있다.

(16) 튀링엔 주

튀링엔 주는 주의회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 des Thüringer Landtags)²²⁾을 두고 있으며, 직무규정에는 “부칙 1 튀링엔 주의회 의원의 행위규율”(Anlage 1 Verhaltensregeln für die Mitglieder des Thüringer Landtags)이 있다. 이 행위규율의 내용에 따르면 행위규율 의무위반 시의 징계내용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징계내용으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일종의 사과로서의 입장표명 요구가 있다.



18) <http://www.landtag.sachsen.de/de/landtag/grundlagen/87.aspx#Anlage1>

19) <http://www.landtag.sachsen-anhalt.de/fileadmin/downloads/GO-Landtag.pdf>

20) <http://www.gesetze-rechtsprechung.sh.juris.de/jportal/portal/t/rwn/page/bsshoproduct.psm1?doc.hl=1&doc.id=jlr-LTGOSHrahmen%3Ajuris-lr00&showdoccase=1&documentnumber=1&numberofresults=98&doc.part=X&doc.price=0.0¶mfromHL=true>

21) <http://www.gesetze-rechtsprechung.sh.juris.de/jportal/?quelle=jlink&query=AbgVerhaltRegl+SH&psml=bsshoproduct.psm1&max=true&aiz=true#jlr-AbgVerhaltReglSHrahmen>

22)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landtag/parlament/geschaeftsordnung/drs50002.pdf>

II. 연방 직무규정의 행위규율에 따른 의무 주요내용

1. 직업 및 소득활동 관련 신고의무(행위규율 제1조)

행위규율 제1조는 연방의회 의원의 직업 및 소득활동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연방의회 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수행하던 직업 및 소득활동 ② 연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기간 중에 함께 수행하려는 소득활동으로서, 월 1,000유로 또는 연간 10,000유로 이상의 소득을 갖는 활동 등이다. 그리고 직업 및 소득활동과 관련된 신고의무는 연방의회 의원직을 얻은 지 3개월 안에 이행되어야 한다.

한편 연방의회 의원직과 함께 수행하는 소득활동에 관한 사항은 행위규율 제3조에 따라 그 소득규모에 따라 3등급²³⁾으로 나뉘어 공적 문서와 독일 연방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다.

2. 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신고의무(행위규율 제2조)

연방의회 의원이 보수를 받고 법원에서 또는 법원 외적으로 독일 연방공화국을 위해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을 상대로 하여 타인의 사무를 변호사로서 대리하는 경우, 그 보수가 연방의회 의장이 확정된 최소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연방의

회 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 직속의 법인, 공법상의 영조물과 재단 등을 위하여 또는 상대로 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보수가 연방의회 의장이 확정된 최소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방의회 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후원금 관련 의무들(행위규율 제4조)

연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자신에게 기부된 금전 및 금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후원금을 별도의 회계를 통해 정리하여야 한다. 1회 후원금이 연간 5,000유로를 넘는 경우에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전체 액수를 연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회 후원금 또는 동일한 후원자를 통한 여러 차례의 후원금이 연간 10,000유로를 넘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출처를 연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연방의회 의장을 통해 공표된다.

4. 이해관계의 공개의무(행위규율 제6조)

연방의회 의원이 연방의회 의원회의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신이 보수를 받고 종사하는 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활동 이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는 행위규율 제3조에 따른 소득활동 관련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



23) 1등급은 월 소득이 1,000유로 이상 3,500유로 미만, 2등급은 월 소득 7,000유로 미만, 3등급은 월 소득 7,000유로 이상.

우에 그러하다.

특히 이러한 의무사항은 연방의회의원법 제 44a조 제4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의원직 획득 이전의 활동 내지는 의원직과 겸하는 소득활동이 의원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경우, 행위규율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로서 의장단은 연방의회 의원의 연간 보수액의 최대 절반까지에 해당하는 질서금(Ordnungsgeld)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자신의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의무 (행위규율 제7조)

연방의회 의원은 행위규율에 따른 자신의 의무사항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장에게 질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의무를 갖는다.

III. 행위규율에 따른 징계의 절차와 내용 (행위규율 제8조)

우선 독일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내용 중에는 한국과 같이 의원직의 상실과 같은 무거

운 징계는 없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 의원직의 상실은 연방의회의원법 제1조²⁴⁾ 및 연방의회선거법 제46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연방의회 의원직 상실의 구체적인 사유는 총 5가지로서 연방의회선거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의원직 획득의 무효 ② 선거결과에 대한 재확정 ③ 상시적인 피선거권의 박탈 ④ 포기 ⑤ 자신이 속한 정당 또는 정당의 부분적 조직체가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행위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해당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공식문서 작성을 통한 공표, 질서금(Ordnungsgeld)의 부과 등이 있다.

1. 의장의 조사 및 정보제공 요구 (행위규율 제8조 제1항)

연방의회 의원이 행위규율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경우, 의장은 우선 그 의원의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실체적, 법률적 관점에서의 심사를 수행한다. 의장은 관련된 의원에게 사안을 밝히기 위해 보충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원이 속한 교섭단체의 위원장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할 수 있다.



24) 연방의회의원법

제1조 연방의회 의원직의 획득과 상실

연방의회 의원직의 획득과 상실은 연방의회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2. 조사 및 징계절차상의 특별 규정 (행위규율 제8조 제3항)

조사 및 징계절차를 주관하는 연방의회 의장이나 의장단 구성원이 행위규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각종 조사 및 징계절차에서 배제되며, 대행자가 해당 조사 및 징계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3. 경고조치(행위규율 제8조 제2항)

의장은 비교적 그 중대성이 적거나 가벼운 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예를 들어 신고기간의 경과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 대해 경고를 한다.

4. 위반사항의 공개(행위규율 제8조 제2항)

경고에 그칠 수 없는 중대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심사의 결과를 의장단과 교섭단체 위원장들에게 통지한다. 의장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의장단은 해당 의원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에 행위규율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확정한다. 연방의회 의원이 행위규율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장단의 확정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은 인쇄물의 형태로 공표된다.

한편 의장단의 심사결과 해당 의원의 의무위반이 없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표될 수도 있다.

5. 질서금(Ordnungsgeld)의 부과 (행위규율 제8조 제4항)

의장단은 자신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새로운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질서금(Ordnungsgeld)을 부과할 수 있다. 질서금의 액수는 개별적 상황의 중대성과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질서금은 연방의회 의원의 연간 보수액의 절반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해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 질서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 중 연방의회 의원법 제44a조 제4항과 행위규율 제6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시에는 징계로서 질서금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

IV.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와 행위규율 제8조에 따른 의무사항과 위반 시의 징계

1.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에 따른 의무의 내용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는 제1항에서 연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원칙적으로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항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이러한 겸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방의회 의원직의 수행과 관련된 부당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연방의회 의원들은 법률상 규정된 기부금이나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편익 외의 다른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자의 이해관계를 연방의회에서 대변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한 부당한 금품의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규정된 기부금이 아닌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연방의회 의원의 반대급부가 없는 금전의 수취를 금지하고 있다(동조 제2항).

2.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의 위반 시의 행위규율 제8조에 따른 징계의 절차와 내용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규율 제8조 제5항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위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연방의회 의장은 행위규율 제8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에 사건에 대한 실체적, 법률적 관점에서의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의장은 관련된 의원에게 사안을 밝히기 위해 보충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원이 속한 교섭단체의 위원장에게 입장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심사의 결과를 의장단과 교섭단체 위원장들에게 통지한다. 의장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의장단은 해당 의원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에 행위규율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확정한다.

해당 의원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장단의

확정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은 인쇄물의 형태로 공표되며, 이는 해당 수취 금품의 연방 자산으로의 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행된다. 한편 의장단의 심사결과 해당 의원의 의무위반이 없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표될 수도 있다.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에 따른 부당한 금품 수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즉 동조 제2항 제3문이 의미하는 적절한 반대급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금전거래의 통상적인 관계가 고려되는데, 특히 급부와 반대급부가 명백하게 비례관계에서 벗어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3. 부당하게 수취한 금품의 연방 자산으로의 귀속(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 제3항)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와는 별도로 연방의회의원법 제44a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수취한 금품은 연방 자산으로 귀속된다. 다만 해당 금품의 수수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러하다(동조 제3항).

한편 이러한 부당한 금품수수가 형법 제331조 이하의 뇌물수취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배 정 범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